

영등포구의회
제210회 임시회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10. 22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專門委員 崔光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5호로 2018년 10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기 불황으로 자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수혜를 주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우리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8년 기금운용계획변경요구 내역

- 변경 대상: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 변경 요구액: 1,000백만원 융자금 증액
- 기금의 용도
 -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4. 검토의견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2/10 이상 금액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임.
-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총 조성액은 137억 5,600만이며, 당초 2018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기금 운용액은 82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용자금 50억원을 60억원으로 10억원 증액하고, 예치금 32억 3,400만원을 22억 3,400만원으로 10억원 감액하는 것으로서, 전체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발생한 것임.
- 검토 결과,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용자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 등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보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2(융자계획수립 및 추가융자)

① 구청장은 매년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융자 할 수 있다.